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3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205247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redacted]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2042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12.
판 결 선 고	2016. 4.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0. 7. 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30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보상이나 협의 없이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위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은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공적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꾀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하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널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수단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③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 공공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30

과 그 부지는 이미 공공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이 가능할 뿐, 임의처분조차 사실상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재산권인데,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사전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은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으로 침해받는 사익보다는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바1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실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33년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효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는바, 이는 민법 제187조에서 정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실효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30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정영식

판사 조기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30

별지

부동산 목록

1. 시흥시 신천동 314-151 도로 4948㎡
2. 시흥시 신천동 314-152 도로 236㎡
3. 시흥시 신천동 314-66 도로 233㎡
4. 시흥시 신천동 314-77 도로 285㎡
5. 시흥시 신천동 314-122 도로 217㎡
6. 시흥시 신천동 314-112 도로 273㎡. 끝.